노사협의회 운영내규 개정사항

산학지원팀

가. 개정 사유

○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입후보 자격 절차를 수정하고자 함

○ 보궐선거에 대한 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○ 제10조(후보 등록)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내용 삭제

○ 제12조(보궐선거)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위원으로 함

다.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0조(후보 등록)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**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(복수추천 가능)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.**	제10조(후보 등록)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**입후보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**	내용수정
제12조(보궐선거)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	제12조(보궐선거)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**다만, 이전의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.**	내용수정
<신 설>	부 칙 **이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**	부칙신설